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안) 의견수렴 및 공람 공고

1.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50조 및 『건설사업관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4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주무관청”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용역사업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연구공간 확충 임대형 민자사업(BTL) 건설사업관리(CM)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 본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에 의견서[양식1]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다음 장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3. 9. 6.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다 음 -

- 1) 용 역 명 :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연구공간 확충 임대형 민자사업(BTL) 건설사업관리(CM)용역
- 2) 사업개요
가.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유니스트 길 50
나. 연 면 적 : 약 101,293m²
- 3) 용역기간 : 2013.11 ~ 2016.07
- 4)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7일
- 5) 공람방법 : 미래창조과학부 및 울산과학기술대학교 홈페이지 게재
- 6)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안) : 붙임1. 참조
- 7) 의견제출 방법 : E-mail로 제출(첨부1, 의견서 양식 사용)
- 8) 제출장소 :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시설팀
(E-mail : marchi@unist.ac.kr, 최호일)
- 9) 문의사항 : 미래창조과학부 장종덕 사무관 (☎ 02-2100-2663)
울산과기대 최호일 (☎ 052-217-1205)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연구공간 확충 임대형민자사업(BTL)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의견수렴〉

2013. 09. 06.



미래창조과학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의견수렴

1. 목적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50조 및 『건설사업관리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4조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시행하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연구공간 확충 임대형 민자사업(BTL)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의 선정을 위한 수행능력 평가 기준과 세부 평가방법을 정하기 위하여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 관련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15호, 2013.04.16.)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25호, 2012.10.26.)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4253호, 2012.08 23.)

3. 의견수렴 방법 및 일정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일정 : 2013. 09. 06. ~ 2013. 09. 12. 오후 6시까지(7일간)
- 의견제출 방법 : E-mail로 제출(첨부1. 의견서 양식 사용)
- 의견제출처 : marchi@unist.ac.kr

4. 기타

- 의견서에 제출자의 성명, 소속, 연락처 등이 정확히 기재된 의견만을 대상으로 함.
- 당해 기준(안)은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행정절차 이행과정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별첨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별첨]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별표7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집행하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연구공간 확충 임대형 민자사업(BTL)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할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기준일 등) ①[별표1]의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다만, 업무중첩도의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시 명시된 착수예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평가점수에 소수점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항목(요소)별 합계점수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3조(적용기준) ①사업수행능력평가는 “참여기술자 및 수행실적 등에 의한 평가(이하 “수행실적평가”라 한다.)”로 한다.

제4조(배점기준) ①“수행실적평가”의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범위 및 평가방법 등은 [별표1]과 같다.

②“수행실적평가”는 평가항목별(가점 포함)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의 합계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100점으로 한다.

제5조(평가방법) ①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평가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수행실적평가”는 [별지1]의 세부평가기준에 의한다.

제6조(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평가방법) ①공동계약수급체의 구성원은 5인 이하로 제한하며 구성원의 허용범위는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동이행방식: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2. 분담이행방식: 자격 또는 면허 보완인 경우 허용한다.

②공동수급체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 및 공사 수행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의 “개발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한 실적합계에 대하여 평가한다.
2. 평가요소 중 신용도의 “재정상태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의 “투자실적”, “활용 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평가한 후,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③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 구성원만으로 평가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자격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단, 참여기술자는 평가할 수 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구성원을 제외하고 평가

④제3항제2호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할 경우, 제외된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제7조(적격자 선정 결격) 다음 각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마감일 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3. 신청서의 내용이 허위,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5. 입찰공고시 제시한 참여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라 참여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6.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자를 평가대상 참여기술자에 참여 시키지 아니한 경우
7. 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 시

제8조(적격자 등의 선정) ① 평가의 결과는 즉시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공시한다.

② “수행실적평가”의 경우 [별표]1. “참여기술자 및 수행실적 등에 의한 평가”에 의한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득점자를 입찰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90점 이상인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85점 이상인 자 중 10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제9조(평가결과 통지) ①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신청자는 평가자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공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재평가) ①제8조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부도 등의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만으로 재평가한다.

②제8조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신청서의 책임기술자를 배치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기타참여기술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평가대상)를 제외하고 재평가한다.

③제9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 신청기한내에 평가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을 이유로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사실을 확인한 후 3일 이내에 재평가 한다.

④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이후 당해 용역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자를 다른 감리용역에 중복적으로 배치하여 다른 감리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되었거나, 타 발주청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타 발주청이 미래창조과학부보다 먼저 낙찰자로 선정한 경우에 한함)에는 중복배치로 보아 업무중첩도를 재평가 한다.

제11조(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발주청은 입찰참여업체가 제출한 평가서류를 평가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지정한 자로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12조(기타사항)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기준을 당해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입찰공고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별표 1]

《 건설사업관리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

1. 참여기술자 및 수행실적 등에 의한 평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배점
[가] 참여기술자	책임기술자	해당분야 경력	13
		직무분야실적	9
	기타참여기술자	해당분야경력	15
		직무분야실적	10
	교육훈련		3
	【소계】		【50점】
[나] 유사용역 및 공사 수행실적	수행실적	유사실적(용역 및 공사)	15
	【소계】		【15점】
[다] 신용도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용역업자/참여기술자	5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7
	별점		5
	【소계】		【17점】
[라] 업무중첩도	책임기술자	업무중첩기간	4
	기타참여기술자	업무중첩기간	4
	【소계】		【8점】
[마]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	3
	투자실적	최근3년간 투자실적평균비율	6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	1
	【소계】		【10점】
【총계】			【100점】

[별지 1]

《참여기술자 및 수행실적 등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기술자		[50]								
	(1) 책임기술자	{22}								
	(가) 해당 분야 경력	(13)	• 책임기술자에 대한 해당분야경력은 당해 용역의 해당 분야와 같거나 유사한 공사에서 건설사업관리 및 기타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으로 평가							
			당해공사규모	자격	등급	해당분야 경력(단위 : 년)				
			1,000억원이상	건축시공기술사 또는 건축사	특급	12 이상	12 미만 11 이상	11 미만 10 이상	10 미만 9 이상	9 미만
		점수	—	—	13	11.5	10	8.5	7.0	
			1) 해당분야 : 건축공사 2) 당해 용역의 대상공사 규모에 따른 책임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술자 배치시 “0”점으로 평가한다. 가) 당해 용역에 책임감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책임기술자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60조에서 정하는 책임감리원의 경력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으로 처리 나) 기술자의 등급은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하며, 구분의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 1에 따름. 다만,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는 특급기술자로 봄 3) 기간합산은 (건설사업관리경력)×(100%)+(기타 건설공사업무경력)×(60%) 가) 참여기술자의 경력보유현황은 해당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자료로 평가 나) 기타 건설공사업무경력은 해당분야에 관하여 계획설계,시공,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공사,설계), 감리(공사, 설계) 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합하여 산정 다) 해당 분야의 경력에 중복되는 기간이 나타날 경우 책임기술자에게 유리한 1개의 경력만을 인정 4)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분야 및 직무분야의 건설사업관리 및 기타 건설공사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점수산정후 아래 5)를 적용하여 평가배점한다. 5) 건설사업관리(상주) 참여에 따른 기준치 적용—발주청(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5호)에서 발주한 용역							
			CM 합산 경력	2년 이상	2년 미만 1.5년 이상	1.5년 미만 1년 이상	1년 미만 0.5년 이상	0.5년 미만		
			사업책임	100%	90%	80%	70%	60%		
	(나) 직무 분야 실적	(9)	• 직무분야 경력은 책임기술자가 직무분야(「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조 별표1 제3호 건설기술관련 기술분야 및 등급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							
			직무분야 실적							
			구분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점수	9	8	7	6	5		
			1) 평가대상 직무분야는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 2) 당해 직무분야에서 계획,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공사,설계), 감리(공사,설계),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에 실제로 참여한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 기타참여 기술자	{25}	• 기타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제시하는 분야별 참여기술자를 대상으로 평가 • 평가점수는 평가대상 기술자 각각을 이 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참여기간, 업무의 비중 등을 고려해 입찰공고에서 정한 경중율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정					
		(가) 해당 분야 경력	(15)	• 해당분야 경력은 당해용역의 업무범위에 따라 입찰공고에서 지정하는 등급 및 경력을 평가				
	당해공사규모		해당분야 전문경력(단위 : 년)					
	500억원이상		8 이상	8 미만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점수		15	13.5	12.0	10.5	9.0	
	1) 해당분야 : 건축공사 《설계 참여사업관리자》 기간합산은 아래와 같이 한다 · 계획·설계, 설계, 건설사업관리, 감독, 감리(설계) : 100% · 감리(공사), 사업관리, 안전관리, 품질관리, 시공, 시험, 검사, 유지관리 : 60% 《시공단계 참여사업관리자》 · 시공단계 참여사업관리자의 해당분야 경력평가는 책임기술자의 경력평가 방법과 동일하게 평가							
	(나) 직무 분야 경력	(10)	《설계 참여사업관리자》 · 건설사업관리, 설계, 계획·설계, 사업관리, 감독, 감리(설계)경력					
			경력(단위 : 년)					
			구분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점수	10	9	8	7	6
《시공단계 및 기술지원 참여사업관리자》 · 시공단계 참여사업관리자의 직무분야 경력평가는 책임기술자의 경력평가 방법과 동일하게 평가								
경력(단위 : 년)								
구분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점수	10	9	8	7	6			
(3) 교육훈련 평가		(3)	- 최근 3년간 참여기술자가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합산하여 평가 · 2주이상 교육을 받은 경우 : (교육훈련이수자/참여기술자)×3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받은 경우 : (교육훈련이수자/참여기술자)×1.5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나] 유사용역 및 공사수행실적	수행실적	[15]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는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로 발주청(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5호)에서 발주한 용역으로 용역비 10억원 이상이거나 연면적 30,000㎡ 이상인 실적(공동주택, 군사시설, 공장, 창고시설 용도 제외)에 대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 실적 및 책임감리용역 완료 실적을 업체별로 절대 평가 한다. ※상기 연면적은 자사 보유 지분율을 고려하지 않으며, 용역비는 지분율 고려					
			당해공사규모	유사용역 및 공사 수행실적(단위 : 억원)				
			1,000억원이상	250 이상	250 미만 200 이상	200 미만 160 이상	160 미만 120 이상	120 미만 60 이상
			점수	15.0	13.5	12.0	10.5	9.0
			1) 실적 산정 방법 가) (건설사업관리)×(100%)+(전면책임감리)×(70%) 나) 건설사업관리 실적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용역 수행이 완료된 실적을 평가 (2) 한국건설관리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 다) 전면책임감리 실적 (1) 전면책임감리용역 수행실적을 평가 (2) 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분야에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용역수행이 완료된 실적으로서, 다음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실적을 평가 (가)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 ※ 당해 공사규모별 유사용역 및 공사 수행실적이 최저규모 미만인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함.					
[다] 신용도		[17]						
	(1)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5}	1) 참여업체는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5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참여기술자(비평가 대상 포함)는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다만, 참여기술자가 제5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감독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최근 1년간 재직기간중 해당 분야의 건설공사 또는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의 내용에 따라 감점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 재정상태 건설도	{7}	*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배점	
			A- 이상		A2- 이상		A- 이상		7	
			A- 미만 BBB- 이상		A2- 미만 A3- 이상		A- 미만 BBB- 이상		6.5	
			BBB- 미만 B- 이상		A3 미만 B- 이상		BBB- 미만 B- 이상		6	
			CCC+이하		C이하		CCC+이하		5.5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0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 1)할 수 있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수행실적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조달청에 통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며, 같은 종류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또한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별점	{5}	1)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비평가 대상 포함)가 본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별점을 받은 경우 누계 평균별점에 따라 감점							
			누계평균 별점	1점 이상 2점 미만	2점 이상 5점 미만	5점 이상 10점 미만	10점이상 15점미만	15점 이상 20점 미만	20점 이상	
			점수(감점)	0.2	0.5	1.0	2.0	3.0	5.0	
[라] 업 무 중 첩 도	업무중첩 기간	[8]	1) 책임기술자 및 기타참여기술자를 타 공사현장(예: 시공자의 경우 시공현장, 감리자의 경우 감리현장)에 배치할 경우 중복배치로 봄							
			2) 입찰공고시 명시된 착수에정일을 기준으로 책임기술자가 타 공사현장 중복배치 여부 및 기간을 평가							
			3) 중복배치 된 용역 또는 공사의 계약서사본과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구분		중복 기간	중복 없음	2개월미만	2개월이상 5개월 미만	5개월 이상	
			책임기술자		점수	4	3	2	0	
			기타참여 기술자	상주	점수	3	2	1	0	
				기술지원	점수	1(중복건수에따라평가)				
			※ 업무중첩도 평가는 평가대상 기술자에 대하여 평가한다							
			※ 기타참여기술자(시공단계상주)의 평가는 참여기술자 각각의 중복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예: 상주참여기술자 4명의 중복기간을 합산한 결과 중복기간이 3개월인 경우 평점은 1점)							
			※ 기술지원기술자는 다른 공사현장의 기술지원감리원으로 10개이상 중복배치 시 : 0점 - 단 전기감리원은 9개, 소방감리원은 5개 이상 다른 공사현장에 중복배치 시 : 0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마]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1) 개발실적	{3}	1) 배점 가) 건설신기술 : 건당 1점 나)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0.6점 다)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3점 라) 건설신기술은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건당 배점에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5">가 중 치</th></tr><tr><th>1.0</th><th>0.9</th><th>0.8</th><th>0.7</th><th>0.6</th></tr><tr><td>실적건수(건)</td><td>50 이상</td><td>50 미만 20 이상</td><td>20 미만 5 이상</td><td>5 미만 3 이상</td><td>3 미만 1 이상</td></tr><tr><td>실적금액(억원)</td><td>70 이상</td><td>70 미만 25 이상</td><td>25 미만 5 이상</td><td>5 미만 1 이상</td><td>1 미만 0.5 이상</td></tr></table>	구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실적건수(건)	50 이상	50 미만 20 이상	20 미만 5 이상	5 미만 3 이상	3 미만 1 이상	실적금액(억원)	70 이상	70 미만 25 이상	25 미만 5 이상	5 미만 1 이상	1 미만 0.5 이상
			구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실적건수(건)	50 이상	50 미만 20 이상	20 미만 5 이상	5 미만 3 이상	3 미만 1 이상																		
			실적금액(억원)	70 이상	70 미만 25 이상	25 미만 5 이상	5 미만 1 이상	1 미만 0.5 이상																		
			* 위 실적건수와 실적금액 중 한가지이상 충족한 경우 인정																							
			마) 특허,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건당 배점에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																							
			<table><tr><th>구분</th><th>5년미만</th><th>5년이상 10년미만</th><th>10년이상 20년미만</th></tr><tr><td>특허</td><td>100%</td><td>80%</td><td>60%</td></tr><tr><td>실용신안</td><td>100%</td><td>80%</td><td>-</td></tr></table>	구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구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2) 인정기준 가) 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건설사업관리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나)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고 건설사업관리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 인정 다)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라) 최초 출원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마) 건설신기술은 건설신기술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 특허·실용신안은 특허청에서 발급한 등록원부로 평가한다.																										
(2) 투자실적	{6}	1)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table><tr><th>구분</th><th>3% 이상</th><th>3.0% 미만 2.5% 이상</th><th>2.5% 미만 2.0% 이상</th><th>2.0% 미만 1.5% 이상</th><th>1.5% 미만</th></tr><tr><td>점수</td><td>6</td><td>5.4</td><td>4.8</td><td>4.2</td><td>3.6</td></tr></table>	구분	3%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점수	6	5.4	4.8	4.2	3.6												
		구분	3%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점수	6	5.4	4.8	4.2	3.6																			
		2) 회사 설립 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최저점수로 평가																								
3) 해당 건설사업관리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으로 제출																										
4)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5) R&D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한다.)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3) 활용실적	{1}	1)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건설사업관리자가 실제 적용한 건설사업관리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사업관리자가 최초 출원인(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최초 출원인이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하여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4)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설신기술·특허·실용신안을 보호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간내에 건설공사의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반영(해당기술의 기성 완료 시점)된 실적을 인정하되 이 과정에서 건설사업관리자가 직접 설계한 경우 또는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를 수행하면서 건설신기술·특허·실용신안 활용을 제안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5)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6)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5">가중치</th></tr><tr><th>1.0</th><th>0.9</th><th>0.8</th><th>0.7</th><th>0.6</th></tr><tr><td>활용건수 (건)</td><td>5 이상</td><td>5미만 4이상</td><td>4미만 3이상</td><td>3미만 2이상</td><td>2미만 1이상</td></tr><tr><td>활용금액 (억원)</td><td>20 이상</td><td>20미만 18이상</td><td>18미만 16이상</td><td>16미만 14이상</td><td>14미만 12이상</td></tr></table>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첨부 1] 신용평가등급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